

## 부 록

1.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 심의대상 매체현황
5. 색 인

#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 칙

**제1 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기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심의기본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선거기사심의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2. 선거기사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의무
3.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

**제3 조(심의고려사항)** 위원회는 제2조의 심의기본원칙 위반 여부를 심의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비중
2.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3.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4.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
5.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언론사의 의도성 여부

## 제2장 일반 심의기준

**제4 조(공정성)** 제2조제1호의 공정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기사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기사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일방적, 의도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또는 기고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5 조(형평성)** 제2조제1호의 형평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 또는 사실과 다르게 변형한 기사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 6 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2조제2호의 객관성 및 사실보도의무를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기사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지 않은 기사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을 취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
4.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기사
5.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기사
6.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거나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기사
7.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기사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 7 조(정치적 중립성)** 제2조제3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념,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비난 또는 비방하거나 미화하는 기사
2. 그 밖에 위 1호에 준하는 기사

## 제 3 장 세부 심의기준

**제 8 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위원회 설치일로(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밝히지 않은 경우
3. 위원회 설치일로(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가. 해당 여론조사결과와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

- 나. 그 밖의 사항은 중앙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
4.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설기사에서 해당 조사의 전제 여건 및 결과와 다른 해설을 하거나 해당 조사와 현저히 다른 여건에 적용하는 경우
  6.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 인터뷰 및 인용기사 관련보도로써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포함한 개인이나 정당을 포함한 단체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덧붙여 보도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상반된 견해를 균형 있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
3.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 또는 변형시켜 편집, 게재한 경우 또는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0조(사진게재)** 선거와 관련한 사진 또는 이미지 기사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와 관련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
2.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원본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경우
3. 선거운동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참가 인원이나 내용 등을 왜곡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감정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닌 개인 또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 제 4 장 결 정

**제13조(제재결정 등)** ① 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과문 게재
    - 가.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정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반론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결정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의사실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경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의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부적법한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따라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선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각종 규칙을 준용한다.

##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4조(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 (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경우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피추천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사람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의결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소집)** 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심의 및 시정요구

**제12조(심의안건)** ①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등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간행물등 제출 요구)**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정기간행물등의 제출 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 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요구)** ① 후보자가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한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가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사과문 게재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또는 주의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결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요구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 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 등에 대한 제15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시정요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 ②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심청구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및 관련 당사자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 4 장 반론보도청구

- 제19조(반론보도청구회부)** ①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 ③ 심의위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팩시밀리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20조(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결정 및 통보)**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할 경우 해당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 ④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조정중재규칙을 준용한다.

- 제21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 5 장 보 칙

- 제22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 제23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추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첨부 : 본인승낙서 1부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대표자 :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 본 인 승 낙 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직업	
	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경력						

위 본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자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주 :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2~3개 정도를 기재합니다.







##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제8 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 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 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

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 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회·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 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전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

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 8 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⑦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 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 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9조(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때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

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체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당·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당·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방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6조·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
2.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3.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⑩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 심의대상 매체현황

※ 일간지 129종, 주일간지 292종, 전문신문 21종, 뉴스통신 15종 : 총 457종

### 1) 일간지 : 129종

중앙 일간지 (26)	종합일간	1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	6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스포츠지	6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스포츠경향, 일간스포츠
	무가지	3	데일리노컷뉴스, 더데일리포커스, 메트로
지역 일간지 (103)	서울	12	내외일보, 새한일보, 서울일보, 시민일보, 신아일보, 아시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이투데이, 일간투데이, 매일일보, 아시아타임즈, 경향매일
	경기, 인천	19	경도신문, 인천일보, 경기인천일보, 기호일보,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인종합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전국매일, 중부일보, 현대일보, 수도권보, 수원일보
	대전, 충남	10	금강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세종매일, 충청매일, 대전투데이
	충북	5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강원	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부산, 울산	7	국제신문, 부산일보,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울산광역매일
	대구, 경북	11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영남매일,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대경일보, 경상매일, 대경일보
	경남	9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연합일보, 경남도민신문, 창원일보, 일간뉴스경남, 한남일보
	광주, 전남	14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광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광주타임즈, 전남도민일보, 호남일보, 희망일보
	전북	10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새만금일보, 전민일보, 전북매일신문, 일일전북신문
	제주	4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한라일보

2) 주 · 월간지 : 292종

주간지 월간지 (263)	종합주간	14	뉴스포스트, 미디어워치, 민주신문, 사건의내막, 시민사회신문, 월드경제,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현대, 중앙선데이, 토요경제, 주간한국
	서울	37	강남내일신문, 강남저널, 강남포스트, 강서양천신문, 경동신문, 관악신문, 구로오늘신문, 구로타임즈, 노원신문, 동북일보, 동작포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자치신문, 서울강북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서초구민신문, 성북신문, 양천투데이, 영등포신문, 은평시민신문, 종로저널, 강남신문, 위클리온서울, 동대문신문, 동작신문, 마포신문, 서대문신문, 서부신문, 시청신문, 은평신문, 종로신문, 중랑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지역연합신문
	경기 인천	33	가평타임즈, 고양신문, 과천문화신문, 광명일보, 군포신문, 김포신문, 남양주신문, 동부교차로저널, 반월신문, 부천신문, 부천타운, 세종신문, 수원화성오산신문, 시흥신문, 안산정론신문, 안산타임스, 안양광역시신문, 양주신문, 여주신문, 용인신문, 이천신문, 자치안성, 파주저널, 평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포천신문, 화성신문, 남동신문, 시사인천, 연수신문, 굿뉴스, 시선집중, 지방시대, 더피플(ThePeople)
	대전 충남	19	시사총청, 태인미래신문, 천안저널, 보령신문, 온양신문, 충남신문, 서천신문, 놀이신문, 당진투데이, 서산타임즈, 온주신문, 뉴스사천, 당진시대, 금산신문, 예산신문, 공주신문, 홍성신문, 금산저널, 세종포스트
	충북	11	영동신문, 옥천신문, 제천신문, 진천시사신문, 충주신문, 충청리뷰, 증평괴산저널, 음성뉴스, 음성신문, 보은사람들, 보은신문
	강원	18	강릉신문, 설악신문, 원주투데이, 강원리뷰, 흥천신문, 강원영동네트, 워크신문, 강원신문, 영월신문, 삼척동해신문, 횡성신문, 강원희망신문, 횡성희망신문, 흥천희망신문, 강원고성신문, 강원북부신문, 강원가정복지·다문화신문, 철원신문사, 태백신문
	부산	7	부산여성뉴스, 시민미디어, 기장신문,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울주신문, 울산저널
	대구 경북	26	팔공신문, 대구달성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대구푸른신문, 청도신문, 군위신문, 고령신문, 칠곡신문, 성주신문, 성주자치신문, 경북중부신문, 김천신문, 경북자치신문, 상주신문, 영주신문, 영주시민신문, 예천신문, 안동신문, 고향신문, 영덕신문, 울진신문, 의성신문, (영천)시민신문, 경주신문, 울진21
	경남	39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거창신문, 거창신문, 거창중앙신문, 거창韓신문, 경남여성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신문, 글로벌 경남뉴스, 김해뉴스, 남해시대, 남해신문, 뉴스사천,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밀양아리랑신문, 산청시대, 새거제신문,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의령신문, 아림신문, 한산신문, 주간함양, 창녕신문, 하동신문, 하동저널, 한려투데이, 함안뉴스, 함안신문, 함안아리신문, 함안정통신문, 함양신문, 합천대야신문, The 함안신문, 시사인코리아, 피플파워
	광주 전남	36	시민의소리, 강진우리신문,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담양신문, 담양주간신문, 목포시민신문, 목포투데이, 무안군민신문, 무안신문, 남해안신문, 큰여수신문, 여수신문, 영광21, 영광신문, 향진도신문, 장성군민신문, 전남저널, 강진신문, 나주신문, 영광신문, 완도신문, 전남중앙신문, 전남희망신문, 장흥신문, 함평신문, 해남신문, 향도신문, 해남군민신문, 해남우리신문, 화순군민신문, 화순뉴스, 화순일보, 굿뉴스피플, 전라도닷컴, 고흥타임즈

	전북	21	고창신문,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남원시민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서림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완주군민신문, 익산신문, 익산투데이, 정읍신문, 진안신문, 군산신문, 소통신문, 전북신문고, 정읍뉴스, 해피데이고창, 시사전북
	제주	2	서귀포신문, 뉴스제주
잡지 (29)	주간	14	뉴시스아이즈, 대한뉴스, 매경ECONOMY, 미래한국, 시사IN(인), 시사저널, 시사포커스, 씨앤비(CNB)저널, 주간경향,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마리뷰, 주간동아, 주간조선, 한겨레21
	월간	15	경제풍월, 뉴스저널, 서울21, 시사매거진,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폴리피플, 한국논단, 레이디경향, 여성동아, 여성조선, 여성중앙, 우먼센스, 주부생활

3) 뉴스통신 : 15종

뉴스통신	15	내외뉴스통신, ANT뉴스통신, (주)국제뉴스, 서울뉴스통신, 뉴스토마토통신, NSP통신, 뉴스1코리아, 동양뉴스통신, KNS뉴스통신, 코리아프레스, PENTA PRESS, 아시아뉴스통신, 합동뉴스, 뉴시스(NEWSIS), 연합뉴스
------	----	--

4) 전문신문 : 21종

전문신문	11	PD저널, 기자협회보, 변협신문, 재외동포신문,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즈, 농민신문, 환경일보, 미디어오늘, 시정신문, 여성신문
교육신문	10	교육평론, 새교육, 교육사랑, 대한교육신문, 주간 교육, 한국교육신문, 한국교직원신문, 전라교육신문, 참교육신문, 대전교육신문

# 색 인

## 1) 결정유형별

구 분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 체 심 의	경고	2014지선3	울산신문	
	경고	2014지선4	우리일보	
	경고	2014지선5	전북중앙신문	
	경고	2014지선43	경북도민일보	
	경고	2014지선44	경향일보	
	경고	2014지선45	전남중앙신문	
	경고	2014지선46	영남일보	
	경고	2014지선48	대구영남매일	
	경고	2014지선58	경기신문	
	경고	2014지선62	전북중앙신문	
	경고	2014지선78	경기신문	
	경고	2014지선84	대경일보	
	경고	2014지선106	창원일보	
	경고	2014지선108	대경일보	
	경고	2014지선130	경향일보	
	경고	2014지선148	내외일보	
	경고	2014지선168	새거제신문	
	경고	2014지선223	영광신문	
	경고	2014지선224	담양신문	
	경고	2014지선226	군위신문	
	경고	2014지선227	예천신문	
	경고	2014지선233	하나로신문	
	경고	2014지선234	이천일보	
	주의	2014지선1	현대일보	
	주의	2014지선2	경인종합일보	
	주의	2014지선6	경기신문	
주의	2014지선7	경향일보		
주의	2014지선21	뉴스포스트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 체 심 의	주의	2014지선22	대경일보	
	주의	2014지선23	경향일보	
	주의	2014지선25	경북도민일보	
	주의	2014지선26	전라일보	
	주의	2014지선27	부산일보	
	주의	2014지선28	대구일보	
	주의	2014지선29	전북도민일보	
	주의	2014지선34	매일신문	
	주의	2014지선35	대구일보	
	주의	2014지선36	광주매일신문	
	주의	2014지선37	군산신문	
	주의	2014지선38	문화일보	
	주의	2014지선39	한국일보	
	주의	2014지선40	우리일보	
	주의	2014지선41	아시아타임즈	
	주의	2014지선47	여수신문	
	주의	2014지선49	경인일보	
	주의	2014지선50	완주군민신문	
	주의	2014지선51	중부일보	
	주의	2014지선52	중부신문	
	주의	2014지선53	울진신문	
	주의	2014지선54	경주신문	
	주의	2014지선55	성주신문	
	주의	2014지선56	경산신문	
	주의	2014지선57	화성신문	
	주의	2014지선59	경안일보	
	주의	2014지선60	현대일보	
	주의	2014지선61	전국매일신문	
	주의	2014지선63	시대일보	
	주의	2014지선64	아시아타임즈	
	주의	2014지선65	수도일보	
	주의	2014지선66	대경일보	
	주의	2014지선67	대구영남매일	
	주의	2014지선68	내외일보	
	주의	2014지선69	전북일보	
주의	2014지선70	서울일보		
주의	2014지선72	경인종합일보		
주의	2014지선73	시정신문		
주의	2014지선74	중구신문		
주의	2014지선75	뉴스경남		

구분	결정 유형	의결 번호	언론사명	면수
자 체 심 의	주의	2014지선79	주부생활	
	주의	2014지선80	여성조선	
	주의	2014지선81	전남저널	
	주의	2014지선83	경향일보	
	주의	2014지선85	광남일보	
	주의	2014지선86	경남매일	
	주의	2014지선87	대구영남매일	
	주의	2014지선101	전라일보	
	주의	2014지선102	기호일보	
	주의	2014지선107	경안일보	
	주의	2014지선110	함안뉴스	
	주의	2014지선111	광주매일신문	
	주의	2014지선112	나주투데이	
	주의	2014지선114	경안일보	
	주의	2014지선115	경북일보	
	주의	2014지선116	경북도민일보	
	주의	2014지선117	대경일보	
	주의	2014지선118	대구일보	
	주의	2014지선119	경도일보	
	주의	2014지선120	경북매일	
	주의	2014지선121	경상매일	
	주의	2014지선122	거제중앙신문	
	주의	2014지선123	아시아경제	
	주의	2014지선124	영광신문	
	주의	2014지선125	강원일보	
	주의	2014지선126	내외일보	
	주의	2014지선127	충도일보	
	주의	2014지선128	경북매일	
	주의	2014지선129	대경일보	
	주의	2014지선131	충부매일	
	주의	2014지선132	지방시대	
	주의	2014지선133	익산투데이	
주의	2014지선134	서울경제		
주의	2014지선135	여수신문		
주의	2014지선136	경북매일		
주의	2014지선137	광주매일		
주의	2014지선138	전북도민일보		
주의	2014지선139	충청투데이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 체 심 의	주의	2014지선140	경북일보	
	주의	2014지선144	당진투데이	
	주의	2014지선145	한남일보	
	주의	2014지선146	해피데이고창	
	주의	2014지선149	수도권일보	
	주의	2014지선150	경인종합일보	
	주의	2014지선151	여성중앙	
	주의	2014지선154	경남도민신문	
	주의	2014지선155	경기인천일보	
	주의	2014지선169	경기인천일보	
	주의	2014지선170	충북일보	
	주의	2014지선184	전남일보	
	주의	2014지선190	정읍뉴스	
	주의	2014지선191	반월신문	
	주의	2014지선192	고성신문	
	주의	2014지선193	한남일보	
	주의	2014지선194	세종신문	
	주의	2014지선197	경북일보	
	주의	2014지선198	정읍신문	
	주의	2014지선199	반월신문	
	주의	2014지선200	국제신문	
	주의	2014지선203	경향신문	
	주의	2014지선211	서대문신문	
	주의	2014지선212	전북중앙신문	
	주의	2014지선225	나주신문	
	권고	2014지선8	새전북신문	
	권고	2014지선9	아시아일보	
	권고	2014지선10	서울일보	
	권고	2014지선11	울산매일	
	권고	2014지선12	수도권일보	
	권고	2014지선13	대구영남매일	
	권고	2014지선14	경도신문	
권고	2014지선15	수도일보		
권고	2014지선16	인천일보		
권고	2014지선17	중부일보		
권고	2014지선18	시대일보		
권고	2014지선19	광남일보		
권고	2014지선20	대구영남매일		

구분	결정 유형	의결 번호	언론사명	면수
자 체 심 의	권고	2014지선24	영남일보	
	권고	2014지선30	중앙일보	
	권고	2014지선31	시사저널	
	권고	2014지선32	문화일보	
	권고	2014지선33	한국경제	
	권고	2014지선42	경남일보	
	권고	2014지선76	울산신문	
	권고	2014지선77	거창한뉴스	
	권고	2014지선82	경주신문	
	권고	2014지선88	세계일보	
	권고	2014지선89	서울신문	
	권고	2014지선90	한국경제	
	권고	2014지선91	국민일보	
	권고	2014지선92	매일경제	
	권고	2014지선93	뉴스포스트	
	권고	2014지선94	중부일보	
	권고	2014지선95	충남일보	
	권고	2014지선96	대전일보	
	권고	2014지선97	음성뉴스	
	권고	2014지선98	뉴스1	
	권고	2014지선99	연합뉴스	
	권고	2014지선100	인천일보	
	권고	2014지선109	경북일보	
	권고	2014지선113	완주군민신문	
	권고	2014지선147	중부일보	
	권고	2014지선156	시사저널	
	권고	2014지선157	목포시민신문	
	권고	2014지선158	한국경제	
	권고	2014지선159	한국일보	
	권고	2014지선160	세계일보	
	권고	2014지선161	조선일보	
	권고	2014지선162	경향신문	
권고	2014지선163	중도일보		
권고	2014지선164	신아일보		
권고	2014지선165	주간한국		
권고	2014지선166	경북일보		
권고	2014지선171	전국매일신문		
권고	2014지선172	동아일보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 체 심 의	권고	2014지선173	경향신문	
	권고	2014지선174	한국일보	
	권고	2014지선175	뉴스아이즈	
	권고	2014지선176	경북도민일보	
	권고	2014지선177	중부일보	
	권고	2014지선178	광주일보	
	권고	2014지선185	경향일보	
	권고	2014지선186	한라일보	
	권고	2014지선187	매일경제	
	권고	2014지선188	시대일보	
	권고	2014지선195	주간한국	
	권고	2014지선196	월간조선	
	권고	2014지선201	한국교육신문	
	권고	2014지선202	중앙일보	
	권고	2014지선204	서울신문	
	권고	2014지선205	한겨레	
	권고	2014지선206	헤럴드경제	
	권고	2014지선207	아주경제	
	권고	2014지선213	아주경제	
	권고	2014지선214	내일신문	
	권고	2014지선228	경북도민일보	
권고	2014지선229	일간경기		
권고	2014지선230	광주일보		
권고	2014지선231	남도일보		

구 분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시정요구인/언론사명	면 수
시정요구 심의	정정보도문 게재	2014지선167	김주수 의성문소신문	
	정정보도문 게재	2014지선209	류승호 대경일보	
	정정보도문 게재	2014지선210	양해영 경남도민신문	
	경고 결정문 게재	2014지선220	김창균 포천신문	
	경고	2014지선153	김창균 포천신문	
	경고	2014지선216	노두근 함평천지신문	
	경고	2014지선217	강현석 중부일보	
	경고	2014지선218	유두석 우리군민신문	
	주의	2014지선104	유승화 경남투데이	
	주의	2014지선141	강석주 한려투데이	
	주의	2014지선181	윤진식 충청투데이	
	주의	2014지선215	장일 뉴스시스	
	주의	2014지선219	윤장현 한국일보	
	권고	2014지선142	박완수 경남도민신문	
	권고	2014지선179	이철재 수원시민신문	
	기각	2014지선143	박완수 경남매일	
	기각	2014지선182	이낙연 뉴스1	

2) 언론사별

구분	언론사명	결정유형	의결번호	면수
자 체 심 의	강원일보	주의	2014지선125	
	거제중앙신문	주의	2014지선122	
	거창한뉴스	권고	2014지선77	
	경기신문	경고	2014지선58	
		주의	2014지선6	
		경고	2014지선78	
	경기인천일보	주의	2014지선155	
		주의	2014지선169	
	경남도민신문	주의	2014지선154	
	경남매일	주의	2014지선86	
	경남일보	권고	2014지선42	
	경도신문	권고	2014지선14	
	경도일보	주의	2014지선119	
	경북도민일보	주의	2014지선116	
		권고	2014지선176	
		권고	2014지선228	
		주의	2014지선25	
		경고	2014지선43	
	경북매일	주의	2014지선120	
		주의	2014지선128	
		주의	2014지선136	
	경북일보	권고	2014지선109	
		주의	2014지선115	
		주의	2014지선140	
		권고	2014지선166	
		주의	2014지선197	
	경산신문	주의	2014지선56	
	경상매일	주의	2014지선121	
경안일보	주의	2014지선107		
	주의	2014지선114		
	주의	2014지선59		
경인일보	주의	2014지선49		

구분	언론사명	결정유형	의결번호	면수
자 체 심 의	경인종합일보	주의	2014지선150	
		주의	2014지선2	
		주의	2014지선72	
	경주신문	주의	2014지선54	
		권고	2014지선82	
	경향신문	권고	2014지선162	
		권고	2014지선172	
		주의	2014지선203	
	경향일보	경고	2014지선130	
		권고	2014지선185	
		주의	2014지선23	
		경고	2014지선44	
		주의	2014지선7	
		주의	2014지선83	
	고성신문	주의	2014지선192	
	광남일보	권고	2014지선19	
		주의	2014지선85	
	광주매일	주의	2014지선137	
	광주매일신문	주의	2014지선111	
		주의	2014지선36	
	광주일보	권고	2014지선178	
		권고	2014지선230	
	국민일보	권고	2014지선91	
	국제신문	주의	2014지선200	
	군산신문	주의	2014지선37	
	군위신문	경고	2014지선226	
	기호일보	주의	2014지선102	
	나주신문	주의	2014지선225	
	나주투데이	주의	2014지선112	
	남도일보	권고	2014지선231	
내외일보	주의	2014지선126		
	경고	2014지선148		
	주의	2014지선68		
내일신문	권고	2014지선214		

구분	언론사명	결정유형	의결번호	면수
자 체 심 의	뉴스1	권고	2014지선98	
	뉴스경남	주의	2014지선75	
	뉴스포스트	주의	2014지선21	
		권고	2014지선93	
	뉴스사이즈	권고	2014지선175	
	담양신문	경고	2014지선224	
	당진투데이	주의	2014지선144	
	대경일보	경고	2014지선108	
		주의	2014지선117	
		주의	2014지선129	
		주의	2014지선22	
		주의	2014지선66	
		경고	2014지선84	
	대구영남매일	권고	2014지선13	
		권고	2014지선20	
		경고	2014지선48	
		주의	2014지선67	
		주의	2014지선87	
	대구일보	주의	2014지선118	
		주의	2014지선28	
		주의	2014지선35	
	대전일보	권고	2014지선96	
	동아일보	권고	2014지선173	
	매일경제	권고	2014지선187	
		권고	2014지선92	
	매일신문	주의	2014지선34	
	목포시민신문	권고	2014지선157	
	문화일보	권고	2014지선32	
주의		2014지선38		
반월신문	주의	2014지선191		
	주의	2014지선199		
부산일보	주의	2014지선27		
새거제신문	경고	2014지선168		
새전북신문	권고	2014지선8		

구분	언론사명	결정유형	의결번호	면수
자 체 심 의	서대문신문	주의	2014지선211	
	서울경제	주의	2014지선134	
	서울신문	권고	2014지선204	
		권고	2014지선89	
	서울일보	권고	2014지선10	
		주의	2014지선70	
	성주신문	주의	2014지선55	
	세계일보	권고	2014지선160	
		권고	2014지선88	
	세종신문	주의	2014지선194	
	수도권일보	권고	2014지선12	
		주의	2014지선149	
	수도일보	권고	2014지선15	
		주의	2014지선65	
	시대일보	권고	2014지선18	
		권고	2014지선188	
		주의	2014지선63	
	시사저널	권고	2014지선156	
		권고	2014지선31	
	시정신문	주의	2014지선73	
	신아일보	권고	2014지선164	
	아시아경제	주의	2014지선123	
	아시아일보	권고	2014지선9	
	아시아타임즈	주의	2014지선41	
		주의	2014지선64	
	아주경제	권고	2014지선207	
		권고	2014지선213	
	여성조선	주의	2014지선80	
여성중앙	주의	2014지선151		
여수신문	주의	2014지선135		
	주의	2014지선47		
연합뉴스	권고	2014지선99		
영광신문	주의	2014지선124		
	경고	2014지선223		

구분	언론사명	결정유형	의결번호	면수
자 체 심 의	영남일보	권고	2014지선24	
		경고	2014지선46	
	예천신문	경고	2014지선227	
	완주군민신문	권고	2014지선113	
		주의	2014지선50	
	우리일보	경고	2014지선4	
		주의	2014지선40	
	울산매일	권고	2014지선11	
	울산신문	경고	2014지선3	
		권고	2014지선76	
	울진신문	주의	2014지선53	
	월간조선	권고	2014지선196	
	음성뉴스	권고	2014지선97	
	이천일보	경고	2014지선234	
	익산투데이	주의	2014지선133	
	인천일보	권고	2014지선100	
		권고	2014지선16	
	일간경기	권고	2014지선229	
	전국매일신문	권고	2014지선171	
		주의	2014지선61	
	전남일보	주의	2014지선184	
	전남저널	주의	2014지선81	
	전남중앙신문	경고	2014지선45	
	전라일보	주의	2014지선101	
		주의	2014지선26	
	전북도민일보	주의	2014지선138	
		주의	2014지선29	
	전북일보	주의	2014지선69	
	전북중앙신문	주의	2014지선212	
		경고	2014지선5	
경고		2014지선62		
정읍뉴스	주의	2014지선190		
정읍신문	주의	2014지선198		
조선일보	권고	2014지선161		

구분	언론사명	결정유형	의결번호	면수
자 체 심 의	주간한국	권고	2014지선165	
		권고	2014지선195	
	주부생활	주의	2014지선79	
	중구신문	주의	2014지선74	
	중도일보	주의	2014지선127	
		권고	2014지선163	
	중부매일	주의	2014지선131	
	중부신문	주의	2014지선52	
	중부일보	권고	2014지선147	
		권고	2014지선17	
		권고	2014지선177	
		주의	2014지선51	
		권고	2014지선94	
	중앙일보	권고	2014지선202	
		권고	2014지선30	
	지방시대	주의	2014지선132	
	창원일보	경고	2014지선106	
	충남일보	권고	2014지선95	
	충북일보	주의	2014지선170	
	충청투데이	주의	2014지선139	
	하나로신문	경고	2014지선233	
	한겨레	권고	2014지선205	
	한국경제	권고	2014지선158	
		권고	2014지선33	
		권고	2014지선90	
	한국교육신문	권고	2014지선201	
	한국일보	권고	2014지선159	
		권고	2014지선174	
		주의	2014지선39	
	한남일보	주의	2014지선145	
주의		2014지선193		
한라일보	권고	2014지선186		
함안뉴스	주의	2014지선110		
해피데이고창	주의	2014지선146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수
	헤럴드경제	권고	2014지선206	
	현대일보	주의	2014지선1	
		주의	2014지선60	
	화성신문	주의	2014지선57	

구 분	언론사명/시정요구인		결 정 유 형	의결 번호	면 수
시정요구 심의	경남도민신문	양해영	권고	2014지선142	
		박완수	정정보도문 게재	2014지선210	
	경남매일	박완수	기각	2014지선143	
	경남투데이	유승화	주의	2014지선104	
	뉴스1	이낙연	기각	2014지선182	
	뉴스스	장일	주의	2014지선215	
	대경일보	류승호	정정보도문 게재	2014지선209	
	수원시민신문	이철재	권고	2014지선179	
	우리군민신문	유두석	경고	2014지선218	
	의성문소신문	김주수	정정보도문 게재	2014지선167	
	중부일보	강현석	경고	2014지선217	
	충청투데이	윤진식	주의	2014지선181	
	포천신문	김창균	경고	2014지선153	
		김창균	경고 결정문 게재	2014지선220	
	한국일보	유장현	주의	2014지선219	
	한려투데이		주의	2014지선141	
	함평천지신문	강석주	경고	2014지선216	